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2501-2019-001876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1-18 신성네오빌 제7층 제7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9년1월22일	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1-18 신성네오빌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97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7층 공동주택 1층 131.86 m ² 1층 23.75 m ² 1층 13.81 m ² 1층 9.26 m ² 2층 178.68 m ² 3층 130.66 m ² 4층 130.66 m ² 5층 130.66 m ² 6층 130.66 m ² 7층 107.53 m ² 옥탑1층 15.2 m ²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1-18	대	416.1m ²	2019년1월22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9년1월22일	제7층 제702호	철근콘크리트구조 24.16 m ²	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1-18 신성네오빌 제7층 제702호

(대지권의 표시)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	416.1분의 14.46	2019년1월11일 대지권 2019년1월22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19년1월22일 제12573호		소유자 김성국 520714-*****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160, 2동902호 (화곡동, 화곡대림아파트)
2	소유권이전	2019년6월7일 제100101호	2019년1월5일 매매	소유자 강라운 860512-*****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22, 비동 401호(화양동)
2-1	민간임대주택등기	2022년12월2일 제244199호	2019년3월5일 민간임대주택 등록	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
3	2-1번민간임대주택 등기말소	2025년2월17일 제362093호	2023년2월26일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	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4일 제3488607호	2025년7월1일 서울남부지방법 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105 79)	채권자 오태석 871224-*****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97, 702호 (화곡동, 신성네오빌)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2501-2019-001876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1-18 신성네오빌 제7층 제7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강라운 (소유자)	860512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22, 비동 401호(화양동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4일 제3488607호	채권자 오태석	강라운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	임차권설정	2024년11월22일 제220085호	임차보증금 금278,250,000원(2022.10.31. 금13,250,000원 증액) 임차권자 오태석	강라운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